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의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폐수 유입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신고·준공검사 등의 의무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며, 기술진단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11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공폐수처리시설로의 폐수 유입승인, 배수설비 설치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오·폐수 유입승인, 배수설비 설치승인 등 규정(안 제71조의2)

- 1)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 배수설비 설치 승인신청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및 승인서 등 통지 규정
- 2) 배수설비 시공 요건을 갖춘 자, 배수설비 최초 사용 및 구조 변경 시 신고 규정 마련

나. 배수설비 등 조치명령 규정(안 제71조의3)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개·보수, 철거 등 조치명령 시 조치내용 및 이행 기간 규정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권한위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제81조제1항제26호, 안 별표 18)

오·폐수 유입승인, 배수설비 설치승인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환경부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하
고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라.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 결과 등의 접수와 과태료 부과 권한위임 및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제81조제2항제9호의3·
제25호, 안 별표 18)

1)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의 결과와 개선계획,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의 접수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

2)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세부 과태료 부과 기
준을 정함

마. 기타 오기 정정(안 제81조제1항제26호·제2항제25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변경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서를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일반현황
 2. 오·폐수배출량
 3. 오·폐수배출농도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사항
 4.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사항
 5.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외의 처리계획
- ②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수설비 설치 승인신청서를 시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 설계서

3.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4. 유입승인 신청내역 및 사용개시일

5. 유량계 등 측정기기 종류

③ 법 제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중 수질분야에 등록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④ 법 제51조제9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배수설비를 최초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⑤ 법 제51조제11항에 따라 승인·신고 및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승인·신고 및 준공검사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의3(배수설비 등의 조치명령) 시행자는 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하여

야 한다.

1. 조치 내용

2. 조치 이행기한

제81조제1항제26호 중 “제2항제4호의2”를 “제2항제4호의2, 제4호의3”으로,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제3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6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를 제3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유입처리 승인 신청 여부와 관련된 사항
제81조제2항제9호의3을 제9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5호 중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4,”를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부터”로, “제2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를 “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으로, “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으로 한다.

9의3.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와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및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의 접수

별표 18 제2호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법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완	법 제82조제	100	200	300
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	2항제4호의2			
하지 않은 경우				
러.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법 제82조제	60	80	100
신설·증설 전에 오·폐수 유입처리	3항제3호의2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				
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	법 제82조제	60	80	100
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3항제3호의3			
설치(승인과 관련하여 변경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버.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	법 제82조제	60	80	100
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3항제3호의4			
서. 법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배수설	법 제82조제	60	80	100
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지 아니하	3항제3호의5			
고 배수설비를 사용한 경우				
어. 법 제51조의2에 따른 시행자의 조치	법 제82조제	60	80	100
명령을 위반한 경우	3항제3호의6			

부 칙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1조의2(배수설비의 설치 등)</u> <u>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변경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서를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1. 사업장 일반현황</u> <u>2. 오·폐수배출량</u> <u>3. 오·폐수배출농도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사항</u> <u>4.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사항</u> <u>5.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외의 처리계획</u> <u>②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서를 시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u> <u>1. 배수설비 재질 및 물량</u>

2. 배수설비 설계서

3.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4. 유입승인 신청내역 및 사용
개시일

5. 유량계 등 측정기기 종류

③ 법 제51조제6항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을 한 자 중 수질
분야에 등록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
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
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④ 법 제51조제9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을 교부받은 배수설비를 최초
로 사용하려는 경우

<신 설>

제81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25. (생략)

26.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

2.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⑤ 법 제51조제11항에 따라 승인·신고 및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승인·신고 및 준공검사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의3(배수설비 등의 조치명령) 시행자는 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조치 내용

2. 조치 이행기한

제81조(권한의 위임) ① -----

-----.

1. ~ 25. (현행과 같음)

26. ----- 제2
----- 항제4호의2, 제4호의3-----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 중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징수

27. ~ 31. (생략)

<신설>

32.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 9의2. (생략)

<신설>

----- 제3항제3호의2
부터 제3호의6에 따른 과태료
는 환경부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의2 및 제3호의3-----

27. ~ 31. (현행과 같음)

32.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유
입처리 승인 신청 여부와 관
련된 사항

33. (현행 제32호와 같음)

② -----

-----.

1.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와 제4항에

<u>9의3.</u> (생략) 10. 삭제 11. ~ 24. (생략) 25.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4, 제3호의5,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6. (생략) ③ (생략)	<u>다른 개선계획 및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의 접수</u> <u>9의4.</u> (현행 제9호의3과 같음) 11. ~ 24. (현행과 같음) 25.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부터 ----- 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 -----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 ----- ----- ----- ----- 2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연 락 처	(044) 201 - 7068